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법령기능의 보완과 과세의 형평을 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함. (안 제1조)
- 음성나환자집단촌의 명칭을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함. (안 제5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정함.
(안 제10조)
-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달라진 관련 법률 명칭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지 방 세 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

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 2.(생략)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 나.(생략)

다. 한센병

라. ~ 러.(생략)

문 화 재 보 호 법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산지가공업의 육성등) ①농림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공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장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나. 내용타당성

-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등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